

結合財務諸表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타당성의 검토*

南 相 午**

〈目 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2. 실질지배력 이론 |
| II. 결합재무제표의 역사 | 3. 기업실체이론과 소유주이론
(자본주이론) |
| III.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 주식소유구조와 관련하여 - | V.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 |
| IV. 결합재무제표의 이론
1. 기업실체의 공준(Entity
Postulate) | VI. 결합재무제표의 문제점과 비판
VII.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과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적 단일체 (a single economic entity)로서 기업활동을 영위해 온 재벌기업에 대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9년도의 경우 30 대 재벌기업에 대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시도되어 왔지만 재벌기업이 출기차게 반대해 오면서 무산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7년도 말 우리나라가 외화부족으로 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재벌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요청되고 결합재무제표의 제도화가 갑자기 실현되게 되었다. IMF가 닥치지 않았더라면 결합재무제표는 영원히 작성되지 못했었을 것이다.

結合財務諸表(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란 개인 또는 회사가 여러 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 회사들이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관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련되어 있을 경우 이를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이다. 여기서 실질적 지배력이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되는 지분율 50% 초과 소유만이 아니고 50% 미만 소유하더라도 경영권을 소유하여 인사·재무에 대한 권한은 물론 이사회·주주총회를 지배하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제도는 특별히 재벌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기업집단의 재무제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외국의 경영환경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충분한 것이지 결합재무제표까지 제도화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 있어서도 실질지배력에 의한 기업의 소유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에서도 결합재무제표의 문제는 앞으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결합재무제표가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 외국의 경영환경과 다르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5대재벌, 30대재벌이 생산, 수출, 국내매출, 금융, 증권, 고용, 시장점유 등 경제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몇몇 재벌이 그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와 같이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경제활동단위에 대해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재벌은 1960년대로부터 박정희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과 재벌기업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기업은 정치와의 결탁에 의한 政經癱着, 사업확장을 위한 문어발식 경영, 독점과 과감한 업무추진을 위한 船團式 經營, 과도한 차입경영,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계열사간의 연합,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는 풍토의 조성,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비정상적 합병, 비정상적 상속에 의한 富의 이전, 세습경영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재벌 중에는 튼튼한 재벌도 있으나, 과도한 차입경영에 의한 부실한 재벌도 많다. 재벌의 계열회사 중에는 부실한 계열회사가 많아 주요 계열회사가 쓰러지면 재벌 전체가 연쇄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울산, 명성, 국제상사, 한보, 진로, 기아, 동아건설, 해태그룹 등 많은 재벌이 쓰러졌는데, 중요 주력회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서 자금부족상태를 조래하여 전체그룹이 파산하는 국면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벌기업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 재벌 단위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었었더라면 재벌기업의 도산에 대한 대비나 예측이 사전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재벌기업

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능력을 높여 경제정책의 수립, 예산관리, 증권관리, 신용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II. 결합재무제표의 역사

결합재무제표란 말은 본인이 맨 처음 번역한 것이지만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결합재무제표는 그룹재무제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의 순서로 그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결합재무제표의 시초는 1959년 발표된 미국공인회계사회의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 No.51에서 나타났다. ARB No.51의 paragraph No.2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여러 회사에 대해 지배적 주주지분을 갖고 있고, 이들 회사들의 경영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 대신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¹⁾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영환경에 비추어 연결재무제표 만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890년대에 나타난 연결재무제표가 1929년의 경제대공황으로 1933~1934년 제정된 證券法,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상장회사에 의무화하여 연결재무제표가 主財務諸表로 확립되었다. 심지어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납세제도에 의하여 세무상으로도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연결재무제표제도는 1973년 5월 공포된 「5.29 大統領 企業公開促進 特別措置」에 의거 제정된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協定」에서 50억원 이상 대출된 계열기업군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은행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최초이었다. 기업회계에서의 제도화는 1974년 大統領令 제7199호로 제정된 「上場法人 等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에서 1976년 1월 1일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후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었고, 1985. 1. 1에는 「聯結財務諸表基準」이 따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제도는 1976년 도입되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작성되어 오다가 證券去來法施行規則의 개정으로 작성이 의무화되어 1992년부터 작성이 강제되었다.

1)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51, 1959.

그러나 이렇게 해서 도입된 연결재무제표는 한 재벌기업내에 여러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벌단위로의 재무제표가 아니고 각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사결정에 이용하거나 읽고자 하는 정보이용자가 별로 없어 쓸모 있는 재무제표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는 외국과는 달리 30% 이상의 최대주주의 개념에 의해 약간의 실질지배력개념을 도입했지만 실패한 연결재무제표가 되었다.

한국에 있어서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연구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9년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우리나라의 그룹기업의 회계에 관한 연구”에서 삼성·현대·LG·선경·쌍용 등의 그룹에 대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시도하면서 재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합재무제표인 “그룹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²⁾

1970년대 말부터는 대우그룹이 당시의 미국회계법인인 Peat, Marwick & Mitchell과 산동회계법인이 연합하여 영문으로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결합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연결재무제표는 대우그룹의 창업주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1980년대에는 삼성그룹, LG그룹이 삼일회계법인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 그룹이 영문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①해외홍보, ②해외기채 등의 자본조달, ③그룹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

1983년에는 미국의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에서 Frederick D. S. Choi, Arthur Stonehill, 민상기, 남상오, 일본 노무라증권의 두 연구원이 공동으로 “외국재무제표의 분석 : 국제재무비율분석의 효과와 남용”을 저술하여, 한국의 재무비율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³⁾ 따라서 한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재무자료가 최초로 공개되게 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다.

1991년과 1992년에는 각각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의 공동주최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으나 재벌기업의 반대로 결합재무제표는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때에는 결합재무제표를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라고 하였다.⁴⁾

2) 南相牛, “우리나라 그룹기업의 회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9).

3) Frederick Choi, Arthur Stonehill, Sang Kee Min, Sang Oh Nam, Hisaaki Hino, Junichi Ujiie, “Analyzing Foreign Financial Statements : The Use and Misuse of International Ratio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3), pp 113-131.

4) 남상오, “연결재무제표”, 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회계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pp.21-42. 남상오, “기업집단연결제표의 도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도입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한국회계학회), pp.1-40.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획기적 전기는 1997년 말부터 불어닥친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와 IBRD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재벌기업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데서 비롯 된다.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경제주체인 재벌기업에 대해 재무제표가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아울러 재벌기업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위해 결합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결합재무제표제도는 1999년도 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III.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 주식소유구조와 관련하여 -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란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인 2개이상의 회사가 경제적 단일체 (a single economic entity)로 생각되는 경우 작성되는 것으로, 지배회사가 일정한 기준 즉 50% 초과의 지분율에 의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지배를 뜻하는 持分率 50% 초과 (과반수)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50% 초과이면 종속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 그러나 20%-50% 소유의 회사에 대해서는 持分法(equity method)을 적용하여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계정을 조정한다. 20% 미만소유의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수익만 인식하고 종속회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이다. 하나의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종속회사를 연결하여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따라서 회사와 회사간의 관계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聯結財務諸表基準 제3조에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30%이상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실질지배력기준을 포함한 것이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지분율기준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기준의 30% 최대주주의 규정은 외국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과 다른 것이다. 또 이 기준으로 재벌을 한데 묶는 결합재무제표의 효과를 거둘 수도 없었다.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란 개인 또는 회사가 여러 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 회사들이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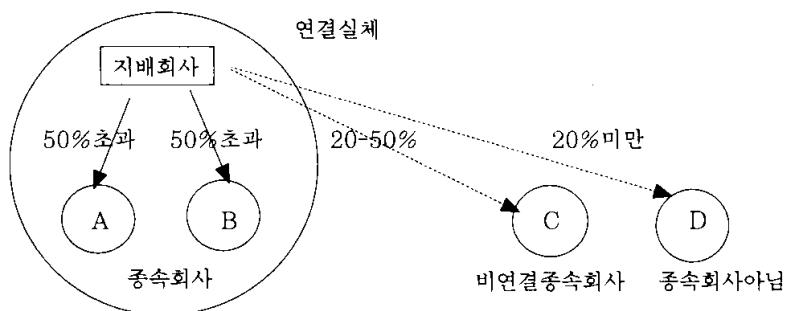
되어 있을 경우 이들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이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서는 실질지배력기준이 중심이 된다. 어느 회사 또는 개인이 타회사에 대해 실질지배력, 즉 경영권이 있으면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이러한 실질지배력에는 지분율 이외에도 경영권 즉 주주총회, 이사회 중심의 지배권이 포함된다. 지분율도 30%이상, 20% 이상 또는 경우에 따라 10% 미만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실질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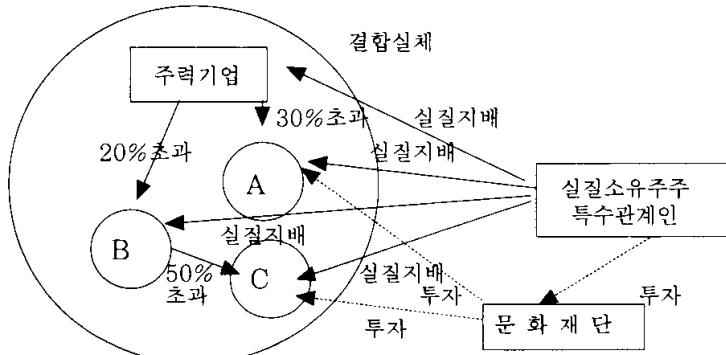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비추어 연결재무제표보다 결합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주요주체가 재벌이라는 것이고, 재벌의 주식소유구조가 재벌의 창업자 그리고 그 후세대 및 특수관계인이 실질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서양식의 연결재무제표가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표가 된다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형 주식소유구조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한국형 주식소유구조의 비교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외국형 주식소유구조와 연결재무제표



한국형 주식소유구조와 결합재무제표



위의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형과 한국형의 주식소유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국형에서는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A, B의 두 종속회사만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C회사는 지분법에 의하여 지분 pickup만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형에서는 실질소유주를 중심으로 주력기업 중에서 한 기업을 지정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결합재무제표에는 주력기업 뿐만 아니라 A.B.C의 회사가 모두 실질지배력이라는 관점에서 포함된다.

IV. 결합재무제표의 이론

결합재무제표가 주장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에는 이론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에서 작성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는 확고한 이론적 근거하에서 작성되고 있는가? 외국의 연결재무제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실질적 지배력을 표시해 주지 못한다고 비판도 되고 있다. 외국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존재하거나 재벌에 의한 소유구조가 많지 않아 연결재무제표로 해결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서양식 연결재무제표제도가 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결합재무제표작성의 근거가 되는 이론을 모색하기로 한다.

1. 기업실체의 공준(Entity Postulate)

원래 회계학에 있어서의 기업실체의 공준(가정)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대해 하나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단독으로 존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으며, 종업원들도 그 기업에 속한다. 따라서 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벌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재벌이 중요한 경제실체이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재벌의 소유관계는 얹혀 있고, 재벌회장은 별도로 봉급을 받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재벌소유주는 그 재벌의 모든 계열회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IMF의 외환위기로 인해서도 재벌의 투명성이 논란되었을 때 재벌처럼 중요한 경제주체에 대해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에 외국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합재무제표가 요구된 것이다.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재벌의 실체가 밝혀지고 경영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며, 현재의 악용되는 내부거래 등이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재벌기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필수적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재벌기업에서는 이러한 투명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반대해 왔다.

기업실체의 공준은 한 기업내에서는 사업부단위로 적용할 수 있고, 개별기업단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연결단위로 적용될 수도 있고, 결합단위로도 적용될 수 있다. 사업부단위에 의한 사업부보고서는 관리회계목적으로 만들어지나 외부에는 공표되지 않는다. 개별기업단위로는 개별재무제표가, 연결단위로는 연결재무제표가 그리고 결합단위로는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외부공표용으로 연결재무제표 하나만이 작성된다. 만일 연결되는 회사가 없으면 물론 개별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연결재무제표에 의해 주식이 상장되고 때로는 연결납세신고제도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중심이었다. 개별재무제표에 따라 주식이 상장되고, 세금신고도 하였다. 연결재무제표가 최근 작성되기 시작하였지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되는 회사들의 연결실체가 많은 정보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경제단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보이용자들은 그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작성에만 의미가 있지 이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벌제도가 존속하는 한 결합재무제표는 필요하다. 재벌이 해체되거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경우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될 수도 있지만 재벌이 존재하는 한 필요하다. 상호지급보증의 폐지 등 재벌을 약화시키는 많은 조치가 있지만 당분간 재벌은 계속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은 자식들간의 상속재산분배 등 여러 형태로 변화하면서 계속 존속할 것이다.

2. 실질지배력 이론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연결 또는 결합할 때에는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50%초과 또는 과반수소유라는 지분율기준을 적용한다. 50%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주주총회에서 이길 수 있고 이사회와 임명, 임원의 임명 등 인사권과 함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재정권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분율기준과 실질지배력기준은 다르다. 지분율기준에서는 50%초과의 주식소유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50%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지배를 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LG정유(주)의 경우 LG그룹이 30%정도의 주식만을 소유하고도 경영권을 갖고 있어 LG정유를 LG그룹계열회사로 취급하고 있다. 또 삼성석

유화학(주)의 경우에도 삼성그룹이 외국기업보다 적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삼성석유화학은 삼성그룹의 계열회사로 간주되고 있다.

실질지배력은 경영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이사회의 지배권, 임직원 임명의 인사권, 자금조달과 운용의 재정권을 포함한다. 극단적인 실질지배력은 1주도 없어도 채권만에 의해 실질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비정상적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주식소유와 함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기준상의 30% 및 최대주주의 개념도 실질지배력기준에 해당한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채택할 때 20%이상의 기준도 실질지배력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 비율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50%초과란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벌기업에 있어서 실질지배력의 판단은 특이하다. 창업주와 그 2세의 소유지분, 8촌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같은 그룹내의 계열회사끼리 소유하는 지분, 재벌기업의 문화재단, 보험회사 등이 소유하는 지분 등 지분소유가 복잡하게 얹혀 있다. 이러한 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내부지분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위장분산도 있어서 지분소유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50%초과 소유의 지분율이 완전하지 않다면 실질지배력기준의 도입이 고려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는 지분율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보다는 실질지배력에 의한 결합재무제표가 더 타당할 수 있다. 실질지배력기준은 과거에 프랑스에서도 도입된 바 있고,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질지배력기준의 문제점으로는 실질지배력의 판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분율기준은 50%초과의 지분율이므로 명백하고 객관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회계에서는 과거 회계의 금과옥조였던 객관성 원칙이나 검증가능성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다. 실질지배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3. 기업실체이론과 소유주이론(자본주이론)

결합재무제표의 이론으로 기업실체이론을 열거하는 사람도 있다⁵⁾. 그러나 소유주이론의 판점에서도 설명된다.

5) 이만우, “결합재무제표기준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한국회계학회 1998 하계 학술발표회 발표노문집 (1998.6), pp. 163-187

기업실체이론(entity theory)이란 기업은 별도로 존재하고 자신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론으로 기업은 소유주 또는 주주와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주요정보이용자는 기업집단의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본다.

이러한 기업실체이론은 미국 FASB의 경제적 단위이론(economic unit concept)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적 단위로서 기업집단을 보고, 결합재무제표는 소유관계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인격을 지닌 기업실체의 관점에서 작성된다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에서는 결합에 포함되는 각 계열회사들이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기업실체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특정의 지배회사는 없지만 전체로서 한 기업집단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의 이론이 기업실체이론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주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소유주이론(ownership theory) 또는 자본주이론(proprietary theory)이란 소유주 또는 자본주가 회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기업의 모든 부와 경영활동을 자본주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는 소유주이론을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이라고도 하는데, 결합재무제표상으로는 지배회사가 없으므로 지배회사이론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결합재무제표상 소유주이론은 소유주를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즉 재벌소유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주요정보이용자는 재벌소유주로, 기업집단의 모든 경제활동은 재벌소유주와 관계되고 재벌소유주는 계열회사의 경제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의 이론은 소유주이론과도 관계가 있다.

V.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

결합재무제표에는 많은 유용성이 있다. 유용성에 앞서서 일반목적재무제표(general -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대 특수목적재무제표(special-purpose financial statements)의 논쟁을 언급하기로 한다.

일반목적재무제표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공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로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개별재무제표가 일반목적재무제표이다. 이에 대해 특수목적재무제표란 특수한 정보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로, 예를 들면 관리회계목적의 재무제표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의 재무제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합재무제표를 특수목적재무제표로 오인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결합재

무제표의 용도는 일반정보이용자 이외에도 금융기관, 정부규제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에 꼴고루 쓰일 수 있다. 개별재무제표와 똑같은 일반목적재무제표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합재무제표가 금융감독기관이 정부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에는 다음의 유용성이 있다.

- ① 재벌단위로 재벌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벌단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재벌의 실체(정체)가 드러난다는 점이 있다. 재벌기업의 투명성이 반영된다.
 - ② 재벌기업의 회계조작, 분식결산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내부거래의 제거, 내부이익의 제거로 종전의 거품조작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이러한 내부거래, 내부채권채무, 상호보증내용은 결합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별도로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재벌기업의 연쇄부도·파산에 대한 예측정보가 되고, 적어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대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기아그룹의 경우 기아자동차는 상태가 괜찮았으나 기아특수강·아세아자동차로 인해 부도상황이 되었다. 만일 미리 기아그룹에 대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이러한 사태는 사전에 예고되거나 적어도 투자자나 채권자의 손실은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 ④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각 개별회사의 재무제표 이외에 개별회사와 관련된 결합재무제표도 작성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관한 정보가 추가된다.
 - ⑤ 기업의 국제화·세계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해외자본조달에도 도움이 된다. 원래 일부그룹에서 자발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벌단위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개별회사 단위는 너무 왜소하다.
- 그러나 반대로 결합재무제표는 해외자본조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경제적 상태를 과대표시하여 왔고 그 과대표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러한 과대표시의 과장은 경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⑥ 정부의 경제정책수립, 정부규제에 도움이 된다. 여신관리, 증권관리, 물가관리, 세금관리 등 각종 정부감독과 규제에 도움이 된다.
 - ⑦ 재벌에 대한 신용평가, 재무분석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는 결합재무제표에 대

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엉터리로 많이 공표되었다. 예를 들면, Fortune 500의 자료라든가 재벌기업의 매출액, 수출액, 당기순이익의 순위가 이중계산 등으로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왔다.

VI. 결합재무제표의 문제점과 비판

결합재무제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문제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인 실질지배력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이며 부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된다. 이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회계학의 전통적 철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도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며 다소 부정확성이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현대적 회계학의 추세에 비추어 인정될 수도 있다.
 - ② 결합재무제표는 현재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작성되지 않는다. 또 외국에서도 신뢰될 수 있는 정보로 인정될지 의문시된다. 이에 대해 재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다. IMF에서도 재벌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라고 하고 있다. 재벌기업 스스로 외국에 결합재무제표를 공표하여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 ③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재벌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오히려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해지며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중계산과 차입경영에 의해 기업을 과대표시함으로써 재벌을 과대포장한 것으로 이제는 진실한 재벌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외국기업과는 달리 지나치게 이익조정을 허용하고 이익을 과대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인정해 왔다. 예, 환차손의 이연자산처리,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처리, 자산재평가로 인한 과대재정상태표시, 특별상각 인정 등이 있다.
- ④ 정부의 기업통제수단이 되고, 기업에 불리한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재벌기업에서 결합재무제표를 기피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심지어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을 해체하는 수단이라고 까지 극단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기우로, 정부규제의 강약은 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 ⑤ 결합대상회사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금융업을 합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있다.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반기업과 금

용업의 경우 별도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현재 정부에서는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준칙의 공개초안이 완성되어 심의중에 있다.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안에 규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합재무제표에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기로 한다.

- ① 결합재무제표는 재벌기업이 존재하는 한 존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벌기업의 투명성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② 기존의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존속시킨다. 연결재무제표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면제시킬 수도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재벌기업에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③ 결합재무제표를 광범위하게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는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결합재무제표를 보완하여 공시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투자자·채권자·신용분석기관의 정보평가의 질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 ④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재벌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의 계정과목을 일치시키거나 결산시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유사계정의 통합, 가결산 등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보다는 쉽게 작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결재무제표의 지분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외국의 자회사, 현지법인, 사무소도 통합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우그룹의 경우 동구라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현지법인을 결합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 국내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제표를 만들면 무의미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 현지법인을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먼저 국내기업만으로, 다음에 해외법인까지도 포함하여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⑥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회사와 금융회사를 분리하여 각각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회사(주로 상품매매업과 제조업을 하는 회사)와 금융회사(증권, 은행, 보험, 투자신탁, 리스회사)는 계정과목이 다르고, 자기자본비율도 다르므로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지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 ⑦ 결합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 지주회사가 여러 계열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배·종속회사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결합재무제표제도는 재벌기업이 있는 한 한시적 제도이고, 앞으로는 연결재무제표 제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 최근 IMF의 충격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적대적 M&A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제도입이 필요하며 연결재무제표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지주회사제도가 됨으로써 현재의 재벌기업의 개인 중심의 주식소유관계가 회사 대 회사의 투자관계로 바뀌어 연결재무제표제도로 이행하기 쉽게 된다.
- ⑧ 재벌기업의 주식소유구조도 투명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재벌 기업의 실질소유주가 전면 부상하여 주식소유를 실명화하고, 특수관계인의 개념을 없애며, 위장분산도 제거하여야 한다.
- ⑨ 회계감사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각 회사에 대해 각각의 회계감사인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한 감사인이 한 재벌기업내의 모든 계열회사를 감사함으로써 감사계약의 효율성, 감사의 통일성, 감사의 능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감사비용도 줄일 수 있다.